변경 대비표

□ 대상펀드명 : 트러스톤 다이나믹코리아50연금저축 증권자투자신탁[주식혼합]

□ 변경 사항:

- (1) 재무제표 확정에 따른 갱신 및 집합투자기구 변동성 업데이트
- (2) 최근 3년 수익률 변동성에 따른 투자위험 등급 변경(4등급→5등급)
- (3)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□ **효력발생 예정일**: 2019년 6월 11일

□ 변경 내용

항 목	정 정 전	정 정 후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
5. 운용 전문인력	(생략)	업데이트
10.집합투자기구 의 투자위험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표준편차 : 5.25% 투자위험등급 : 4 등급(보통 위험)	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표준편차 : 4.67% 투자위험등급 : 5 등급(낮은 위험)
13. 보수 및 수수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
료에 관한 사항	(생략)	업데이트
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	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 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(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 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일 경우 15%)	나. 과세 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 공제제도 : 연간 저축금액 중 400 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종합소득금액 4,000 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,500 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 일 경우 1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- (신설) 종합소득금액이 1 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 억 2 천만원 초과)하는 경우 연간 저축금액 중 300

만원 한도로 12%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 <u>공</u>제

분리과세한도: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 **분리과세한도**:1,200 만원(공적연금소득 제 외)

단, 의료목적으로 인출하는 경우 금액에 관 계없이 분리과세 적용

외)

단,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

-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
- 의료목적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<u>인출하는 연금소득</u>

제 3 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

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업데이트